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3519

발의연월일: 2021. 11. 24.

발 의 자: 박완수 · 권영세 · 김용판

김형동 • 배준영 • 서범수

윤주경 • 이명수 • 최춘식

최형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제도 규정이 없어 단체 장과 지방의회 간 협약 등에 의하여 공공기관 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 회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보니 인사청문회의 형평 성 및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을 임명하려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법률 제 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임명한다"를 "임명하되, 기관장의 임명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임원) ① (생 략)	제9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지	②
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	
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	
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	
로 <u>임명한다</u> .	<u>임명하되, 기관장의 임명은</u>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청문
	회를 거쳐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